

(報 告)

##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80 |
|----------|-----|

제안년월일 : 2000년 2월 8일

발 의 자 : 최유석 의원외 10인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('99. 8. 31) 및 동법 시행령('99. 12. 31)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년1회에서 년2회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정례회의 집회일자, 회기,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정례회의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 (안 제4조 제1호)
-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 (안 제4조 제2호)
-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,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 (안 제5조 제1항)
-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(안 제5조 제2항)

### 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제38조) 및 동법시행령(제19조의 4)
- 행정자치부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준칙안

성남시조례 제 호

##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개최)**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**제3조(회기)**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

**제4조(집회)**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 
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.

**제5조(심의)**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 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**제6조(준용)**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